

#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시행 지침 2.0》 업데이트 및 기업의 고품질 혁신에 대한 신규 정책 지원

2023. 10  
Issue 27

## 개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떻게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업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혁신 활력을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와 과학기술부 정책법규/혁신시스템 건설사는 2023년 7월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시행지침(2.0 판)》<sup>1</sup> (이하 “《지침 2.0》이라 함”)을 공동 발표하여, 기업이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관련 정책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관점에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의 현행 정책을 체계적으로 요약했습니다.

2023년 9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의 선진 제조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sup>2</sup> (재정부/세무총국 공고[2023]43 호, 이하 “43 호 공고”라 함) 및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의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제조기업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비율 인상에 관한 공고》<sup>3</sup>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고[2023]44 호, 이하 “44 호 공고”라 함)를 발표하여, 선진 제조기업, 집적회로 및 공작기계 제조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Newsflash에서는 상술한 《지침 2.0》을 정리하고 정책의 핵심 요점을 제시하며 PwC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상세 내용

###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시행지침(2.0 판)》의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2018년 여러 부서가 발표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시행지침(1.0 판)》(이하 “《지침 1.0》이라 함”)이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침 2.0》은 《지침 1.0》을 기반으로 업데이트 및 개정을 했으며, 주로 6 장, 즉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개요”,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의 주요 내용”, “추가공제 연구개발비용 정산 기준”, “연구

개발비용 추가공제 신고 및 사후관리”로 구성됩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현행 정책 및 규정 개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산 기준, 신고 및 사후관리 등 관점에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해석했습니다. 그 중, 《지침 1.0》과 비교한 《지침 2.0》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구개발 활동 유형 업데이트

《지침 2.0》에서 연구개발 활동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습니다:

- 《프라스카티(Frascati) 매뉴얼》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활동 유형을 업데이트하여 “기초연구”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초연구의 정의는 《재정부/세무총국의 기업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세무총국 공고[2022]32 호)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합니다.
- “응용연구”와 “시험발전”의 주요 목적을 수정했으며, “과학 연구 성과의 직접 응용, 기존 제품, 서비스, 기술, 재료 또는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반복 또는 단순 수정”, “시장 조사, 품질 통제, 유지 보수, 일상적인 테스트” 등 연구개발 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 “실질적 개선” 연구개발 활동 유형을 삭제하고 이를 “시험발전”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 2. 연구개발 활동 판단 기준과 내용 업데이트

《지침 2.0》은 연구개발 활동 판단 기준을 “명확한 혁신 목표가 있을 것”, “체계적 조직 형태가 있을 것” 및 “연구개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업데이트했으며, 3 가지 요점의 내용에 대해 수정을 가함으로써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점 1 “명확한 혁신 목표가 있을 것”: 프로젝트가 “신지식,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 신제품, 신표준 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혁신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요점 2 “체계적 조직 형태가 있을 것”: “프로젝트 생성, 실행 및 종료의 조직적인 프로세스를 거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새로 추가하고, 연구개발 활동 판단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요점 3 “연구개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것”: 프로젝트 연구개발 결과에 불확정성이 있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반복적인 시험과 테스트를 거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새로 추가함.

### 3. “연구개발 활동 판단의 경계와 설명” 새로 추가

연구개발 활동과 기타 산업 활동의 판별, 연구개발 활동과 기타 과학기술 활동의 판별,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활동과 비연구개발 활동의 판별이 포함됩니다. 이들 새로 추가한 내용은 추가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열거의 방식을 통해서 보다 세분화된 판단 방향을 제공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제품의 설계, 제조, 테스트는 모두 연구개발 활동에 속하지만, 대량생산을 위해 시험생산하는 1 차분 제품은 시제품이 아니며, 그 제조는 연구개발 활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인력이 수행하더라도 일상적인 테스트는 연구개발 활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과학기술 활동은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자체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지만, 주로 연구개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연구개발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은 설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취득했다라도 반드시 연구개발 활동인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연구개발 활동에 속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결국 기업이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핵심인 것이며, 따라서 전문성과 복잡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침은 연구개발 활동의 경계에 대해 일부 사례를 제시했지만, 실무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4.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관리” 새로 추가

《지침 2.0》은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적용의 2 가지 핵심은 ‘연구개발 활동의 판단’과 ‘연구개발비용의 정확한 정산 및 집계’이며 둘 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는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의 적용을 위한 기초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기업은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보다 잘 적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생성부터 실행 및 종료까지 관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부분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신규 추가된 것으로서 프로젝트가 “체계적 조직 형태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 업그레이드된 신정책의 주요 내용

선진 제조기업에 대하여 43 호 공고는,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고신기술기업 중 제조기업 일반납세자는 증치세 관련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당기에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가산하여 납부할 증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신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및 증치세 추가공제 등 방면에서 한데 어우러진 세수우대혜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제조기업에 대하여 44 호 공고는, 집적회로 산업과 공작기계 제조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기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비율을 120%로 인상하며, 그 실행 기간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공작기계 제조기업이란 44 호 공고의 별첨 《선진 공작기계 제품 기본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 핵심 요약

---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부문은 기업이 연구개발 혁신 활동을 전개하는 데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예: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비율의 지속적인 인상,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토대로 출시한 세수우대 혜택 등). 한편,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와 고신기술기업 자격에 대한 정부 부문의 감독과 심사는 날로 엄격해졌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공제를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처벌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성시에서 발표했던 고신기술기업이 나중에 “자격을 박탈당한” 케이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이 복잡한 거시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적용 받을 수 있는 세금 우대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1) 그룹의 연구개발 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가의 산업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하며, 기술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초 연구개발, 국가 핵심 기술 장애요인의 해결, 친환경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를 중국 정부의 거시적 목표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부의 연구개발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 2)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를 사실대로 반영하고 과장하지 않으며 단일 템플릿으로 간단히 포장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와 증빙 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보관하며,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의 특성과 특색을 돋보이게 합니다.
- 3) 연구개발 관리에 집중하여 건전한 연구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보상 및 처벌 메커니즘을 적용하도록 하며 연구개발의 진실성, 데이터의 합리성, 텍스트의 충분성을 반영하여 합리적 합법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누립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선진 제조기업, 집적회로 기업, 공작기계 제조기업에 대하여 세수 정책은 지속적으로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제조기업을 제외하고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제조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 추가공제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PwC China Business and Tax News Flash》 2023년 Issue 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p>4</sup>.

---

## 주석

---

1.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시행지침(2.0 판)》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5208701/content.html>
2. 《재정부와 세무총국의 선진 제조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 43호)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359/c5211663/content.html>
3.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의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제조기업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비율 인상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고 [2023]44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13565/content.html>
4. 《PwC China Business and Tax News Flash》 2023년 제 24호 - 《과학기술 혁신 발전 지원, 증치세 등 우대 정책 공동 공포》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3q3/chinatax-news-sep2023-24.pdf>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수연** (86) (21) 5368-4085 suyon.s.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Elaine Chen** (86) (21) 2323-8093 elaine.yl.chen@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3 年 10 月 19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mailto: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www.pwccn.com](http://www.pwccn.com)

© 2023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